

등록금 반환 신청서

|        |    |       |     |
|--------|----|-------|-----|
| 경<br>유 | 학과 | 학생복지처 | 교무처 |
|        |    |       |     |

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소 속  | 대학         |              | 학과(부)        | 학년 |
| 학 번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|    |
| 반환상황 | 학자금<br>대출액 |              | (국가)<br>장학금액 |    |
|      | 계좌번호       | ( 은행 )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| 예 금 주      | ( 학생과의 관계: ) |              |    |

※ 신청서 작성방법 및 별첨서류

1. 반환 신청 대상자: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자퇴(제적, 사망)한 학생
2. 반환기준: 장학금 등을 공제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반환하며 재학생의 경우 자퇴일 기준, 휴학생의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함

| 반환 사유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| 반환금액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학기 개시일(1학기:3.1일, 2학기:9.1일) 전 |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전액       |
| 학기 개시일부터 40일까지               | 등록금(입학금 제외) 전액       |
| 학기 개시일부터 41일~60일까지           |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2/3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부터 61일~90일까지           |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1/2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을 경과한 경우         | 반환액 없음               |

3. 반환받을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외 학생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별첨하여야 함

상기와 같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: (서명 또는 날인)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